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984

2024년 8월 30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8월 12일, 남창진 의원 (찬성자 33명)
- 나. 회부일자 : 2024년 8월 14일
- 다. 상정일자 :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4년 8월 30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남창진 의원)

가. 제안이유

- 본 조례 도로표지 정의의 근간이 되는 국토교통부 「도로표지규칙」이 개정됐으나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조문을 정비하여 법적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도로표지를 국토교통부 「도로표지규칙」 제3조에 따라 정의함.
(안 제3조제5호)

3.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개요

-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표지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상위 법령인 「도로표지규칙」이 2016년 3월 2일 자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도로표지’의 정의와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한편,
- 품질시험소장이 하천복개구조물 및 하수관거 중 차집관거의 주요 취약지점에 대해 월1회 이상 하수가스 발생여부와 함께 조사하는 ‘배기량’을 ‘농도’로 정정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u>5. “도로표지”란 도로구조의 보존과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도로표지규칙」제2조에 따라 경계·이정·방향·노선 및 그 밖의 표지를 말한다.</u> 6. ~ 19. (생 략)	제3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u>5. “도로표지”란 도로이용자가 도로시설을 쉽게 이용하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쉽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로의 방향·노선·시설물 및 도로명의 정보를 안내하는 도로의 부속물로서 「도로표지규칙」제3조에 따라 경계·이정·방향·노선·안내 및 그 밖의 표지를 말한다.</u> 6. ~ 19. (현행과 같음)
제29조(도로표지의 점검) ① (생 략)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점검사항 : 정기점검은 「도로표지규칙」 <u>제3</u>	제29조(도로표지의 점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u>제4</u>

<p><u>조부터 제13조</u>까지의 사항을 점검한다.</p> <p>제44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하수관거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은 환경부의 <u>공공하수도 시설운영·관리 업무지침</u>을 준용한다.</p> <p>제45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생략)</p> <p>②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이하 “시험소장”이라 한다)은 하천복개구조물 및 하수관거 중 차집관거의 주요 취약지점을 선정하여 월1회 이상 하수가스의 발생여부 및 <u>배기량</u>을 조사하여야 한다.</p> <p>③·④ (생략)</p>	<p><u>조부터 제12조</u>-----.</p> <p>제44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 「<u>공공하수도 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u>」-----.</p> <p>제45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 <u>농도</u></p> <p><u>를</u> -----.</p> <p>③·④ (현행과 같음)</p>
---	---

■ 도로표지 관련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

- 안 제3조제5호와 안 제29조제2항제2호는 상위 법령인 「도로표지규칙」이 2014년부터 전면시행된 도로명주소를 도로표지에 반영하기 위하여 2016년 3월 2일자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임.
- 먼저, 안 제3조제5호는 ‘도로표지’의 정의를 개정된 「도로표지규칙」 제2조제1호1)가 새로이 정한 정의를 준용하여 ‘도로이용자가 도로시설을 쉽게 이용하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쉽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로의 방향·노선·시설물 및 도로명의 정보를 안내하는 도로의 부속물로써 「도로표지규칙」 제3조2)에 따라 경계

1) 「도로표지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표지”란 도로이용자가 도로시설을 쉽게 이용하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쉽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로의 방향·노선·시설물 및 도로명의 정보를 안내하는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 2) 「도로표지규칙」 제3조(도로표지의 종류) 도로표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계표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시·군·읍·면 사이의 행정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
 2. 이정표지: 목표지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

· 이정 · 방향 · 노선 · 안내 및 그 밖의 표지'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법적 통일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하겠음.

- 한편, 도로표지는 「도로법」 제55조³⁾에 따라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도로표지의 종류 · 서식과 그 밖에 도로표지에 필요한 사항은 「도로표지규칙」으로 정하고 있음.
- 「도로표지규칙」 제3조에 따르면 도로표지는 그 기능에 따라 경계 · 이정 · 방향 · 노선 · 안내표지로 구분(표 참조)하고,
- 안내방식에 따라 행정구역명, 지명 및 시설물명의 지점을 중심으로 안내하는 '지점 안내표지'와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⁴⁾에 따른 도로명을 중심으로 안내하는 '도로명 안내표지'로 구분토록 「도로표지규칙」 제4조⁵⁾에서 규정하고 있는데(표 참조),

3. 방향표지: 목표지까지의 방향을 나타내는 표지

4. 노선표지: 주행노선 또는 분기노선을 나타내는 표지

5. 안내표지

가. 도로정보 안내표지: 양보차로표지, 오르막차로표지, 유도표지, 예고표지, 보행인표지, 지점표지, 출구감속유도표지, 자동차전용도로표지, 시종점표지, 돌아가는길표지 및 고속국도유도표지

나. 도로시설 안내표지: 휴게소표지, 주차장표지, 시설물(하천, 교량, 터널, 비상주차장, 정류장, 도로관리기관 및 긴급제동시설을 말한다)표지, 긴급신고표지 및 매표소표지

다. 그 밖의 안내표지: 관광지표지, 아시안하이웨이안내표지, 공공시설표지 및 도로관리청이 안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한 표지

3) 「도로법」 제55조(도로표지)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표지의 종류 · 서식과 그 밖에 도로표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도로명주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건물번호"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하 "건물등"이라 한다)마다 부여된 번호(둘 이상의 건물등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등의 전체에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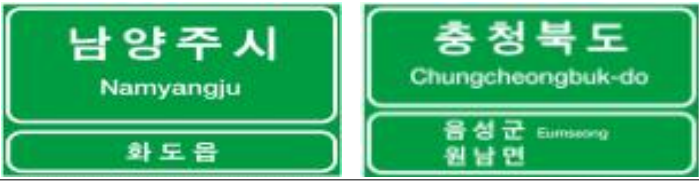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나. 현실적으로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정착하여 활동하는 데 이용되는 인공구조물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조물

5) 「도로표지규칙」 제4조(도로표지의 안내방식 구분) 도로표지는 안내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이는 「도로명주소법」에 근거하여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표기 방법이 전면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사용되어 오던 지점 안내표지와 도로명주소가 도입된 도로표지의 안내방식을 구분하기 위한 것임.

[표] 도로표지의 종류

구분	상세	설치 예
기능별 도로표지 구분 (규칙 제3조)	경계표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시·군·읍·면 사이의 행정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 
	이정표지	목표지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 
	방향표지	목표지까지의 방향을 나타내는 표지 
	노선표지	주행노선 또는 분기노선을 나타내는 표지 
	안내표지	도로정보 안내표지  도로시설 안내표지  그 밖의 안내표지 

1. 지점 안내표지: 행정구역명, 지명 및 시설물명의 지점을 중심으로 안내하는 도로표지
2. 도로명 안내표지: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명을 중심으로 안내하는 도로표지

안내방식별 도로표지 구분 (규칙 제4조)	지점 안내표지	행정구역명, 지명 및 시설물명의 지점 중심		
	도로명 안내표지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명 중심		

출처: 「도로표지규칙」제3조, 제4조 및 [별표 3] 도로표지의 상세규격 및 설치방법 등

- 이를 고려할 때, 안 제3조제5호에서 도로표지를 정의함에 있어 「도로표지규칙」 제3조만을 인용하는 것은 기능에 따른 도로표지만을 구분하고 안내방식에 따른 도로표지 구분이 배제되는 문제가 있는바, 도로표지의 정의에 굳이 도로표지의 종류까지 포함하여 이해를 복잡하게 하기보다는 「도로표지규칙」 제2조제1호가 정하고 있는 정의만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표]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안 제3조제5호)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도로표지”란 도로구조의 보존과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도로표지규칙」제2조에 따라 경계·이정·방향·노선 및 그 밖의 표지를 말한다.	제3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도로표지”란 도로이용자가 도로시설을 쉽게 이용하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쉽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로의 방향·노선·시설물 및 도로명의 정보를 안내하는 도로의 부속물로서 「도로표지규칙」제3조에 따라 경계·이정·방향·노선·안내 및 그 밖의 표지를 말한다.	제3조(정의) ----- -----. 1. ~ 4. (개정안과 같음) 5. “도로표지”란 도로이용자가 도로시설을 쉽게 이용하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쉽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로의 방향·노선·시설물 및 도로명의 정보를 안내하는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 다음으로, 안 제29조제2항제2호는 매 분기마다 실시하는 도로표지 정기점검의 점검사항인 「도로표지규칙」 “제3조부터 제13조”를 “제4조부터 제12조”로 변경하려는 것임.
- 이는 「도로표지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변경된 조번호를 반영하려는 취지로 사료되어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2016년 전면개정에 따른 신규법 조제목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표] 「도로표지규칙」 신규법 조제목 비교

도로표지규칙 [시행 2014. 7. 15] [국토교통부령 제111호, 2014. 7. 15, 타법개정]	도로표지규칙 [시행 2016. 3. 2] [국토교통부령 제294호, 2016. 3. 2,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2조 (도로표지의 구분)	제2조 (정의)
제3조 (안내지명의 선정 및 표기방법)	제3조 (도로표지의 종류)
제4조 (도로표지의 표지판·글자 및 지주의 규격 등)	제4조 (도로표지의 안내방식 구분)
제5조 (글자의 표기)	제5조 (안내지명의 선정·표기)
제6조 (도로표지의 색채)	제6조 (도로표지의 표지판·글자 및 지주의 규격 등)
제7조 삭제	제7조 (글자의 표기)
제8조 (색채의 규격)	제8조 (도로표지의 색채)
제9조 삭제	제9조 (도로표지의 구성 및 재료·제작방법 등)
제10조 (조명장치)	제10조 (도로표지의 설치기준·형식 및 장소)
제11조 (도로표지의 설치기준)	제11조 (도로표지의 설치 절차)
제12조 (도로표지의 설치장소)	제12조 (도로표지의 기능저해 금지)
제13조 (도로표지의 기능저해금지등)	제13조 (도로표지의 관리)
제14조 (도로표지 설치시의 절차)	제14조(시행세칙)
제15조 (도로표지의 관리)	제15조 삭제
제16조(시행세칙)	제16조 삭제

- 「도로표지규칙」 제2조(정의)와 제4조(도로표지의 안내방식 구분)의 신설로 조 번호 체계가 다소 변경되면서 본 개정안대로 조번호 체계를 바꿀 경우 도로표지 정기점검의 점검사항과는 직접 관련성이 없는 「도로표지규칙」 제4조와 제11조가 포

함되는 문제를 담고 있는바, 안 제29조제2항제2호 중 「도로표지규칙」 “제4조부터 제12조”를 “제5조부터 제10조, 제12조”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보임.

[표]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안 제29조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안)
제29조(도로표지의 점검) ① (생략)	제29조(도로표지의 점검) ① (현행과 같음)	제29조(도로표지의 점검)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 ----- -----.	②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점검사항 : 정기점검은 「도로표지규칙」 <u>제3조부터 제13조</u> 까지의 사항을 점검한다.	2. ----- ----- <u>제4조부터 제12조</u> -----.	2. ----- ----- <u>제5조부터 제10조, 제12조</u> -----.

○ 참고로, 서울시 내 설치된 도로표지는 총 11,939개로 「도로표지규칙」 제13조제5항6)에 따라 도로표지를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자

[표] 서울시 내 도로표지 현황 (2024. 3월 기준)

구분	개소	구분	개소
종로구	266	마포구	657
중구	390	양천구	642
용산구	357	강서구	938
성동구	354	구로구	491
광진구	345	금천구	227
동대문구	352	영등포구	726
중랑구	440	동작구	201
성북구	295	관악구	234

6) 「도로표지규칙」 제13조(도로표지의 관리) ⑤ 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도로표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강북구	219	서초구	777
도봉구	316	강남구	1,047
노원구	569	송파구	925
은평구	332	강동구	535
서대문구	304		
합계		11,939	

(출처: 서울열린데이터광장)

- 서울시는 도로표지 유지관리의 총괄관리자를 교통실장으로 지정⁷⁾하고 관련 사무를 재난안전실, 도로사업소, 자치구에 위임하고 있으며([표] 참조),

[표] 서울시 내 도로표지 유지·관리기관 ([별표 1] 주요시설물 관리기관(제5조 관련) 중 발췌)

구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교통관리시설	도로표지	○ 문안검토	교통실장
		○ 자동차전용도로의 도로표지	재난안전실장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도로표지	도로사업소장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표지	자치구청장

- 동 조례 제29조제1항⁸⁾에 따라 매 분기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하여 파손되거나 가려진 표지판, 규정에 맞지 않는 표지판 등을 정비하고 있음.

7)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총괄관리자 지정) ① 시장은 재난안전실장, 교통실장, 기후환경본부장과 정원도시국장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설물의 총괄관리자로 지정한다.

1. 재난안전실장 : 도로, 공동구, 그 밖의 도로부속물(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포함), 도로기능 하천 복개구조물

2. 교통실장 : 교통안전시설·교통관리시설·버스전용차로·자전거도로

3. 기후환경본부장 : 차도·보도의 청소(낙하물 포함)

4. 정원도시국장 : 가로수 식재, 녹(띠)지대 관리, 도로변 녹화(자동차전용도로 구간 제외)

5. 물순환안전국장 : 도로기능 외 하천복개구조물, 하천(하천구역 및 하천시설), 하수도

8) 「도로표지규칙」 제29조(도로표지의 점검) ① 관리자는 도로표지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하여 항상 상태가 양호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점검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하수도 관련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

- 안 제44조는 하수관거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시 준용토록 하는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운영·관리 업무지침’ 앞뒤에 홑낫표(「」)를 붙이려는 것으로,
- 이는 법제처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법령 이름을 다른 법령에서 쓸 때에는 법령 이름이라는 것이 드러나도록 법령 이름 앞뒤에 홑낫표를 붙이도록 권고하고 있는 만큼 적절한 조치라 사료됨.
- 다음으로, 안 제45조제2항은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으로 하여금 하천복개구조물 및 하수관거 중 차집관거의 주요 취약지점을 선정하고 월 1회 이상 하수가스의 발생여부와 함께 조사하는 “배기량”을 “농도”로 용어 변경하려는 것임.
- 품질시험소는 동 조례 제45조9)에 따라 복개하천 및 차집관거 내 유기물질 부패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를 주기적

9)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5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자는 하수도의 기능유지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시점검 : 유지관리 요원의 일상점검
 2. 정기점검 :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은 6개월에 1회 이상, 하수관거 등 그 밖의 시설은 연1회 이상 육안 및 휴대장비 등에 의한 점검. 단, 지역실정 및 시설 등의 상황에 따라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3. 정밀점검 :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의 정밀점검 실시시기는 영 별표 3을 적용하고, 사각형거에 대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며, 그 후에는 이전 정밀점검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5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4. 특별점검 : 강우 전·후 등 특별점검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이하 “시험소장”이라 한다)은 하천복개구조물 및 하수관거 중 차집관거의 주요 취약지점을 선정하여 월1회 이상 하수가스의 발생여부 및 배기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조사를 위한 하수가스의 채취장소는 관리자와 시험소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 ④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소장에게 하수가스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소장은 조사요구가 있을 경우 바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으로 조사하고 가스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취약지점을 선정하여 월1회 이상 가연성 가스 발생여부와 함께 농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 현행에서 사용중인 ‘배기량’은 복개하천 및 차집관거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양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용어로 보여지나 일반적으로 ‘배기량’은 ‘내연 기관의 실린더의 운동으로 밀어내는 기체의 부피’¹⁰⁾로 정의되고 있으며
- 혼합기체를 구성하는 성분의 양의 정도는 ‘농도’로 정의¹¹⁾되고 있고 실제 현장에서도 ‘농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현행에 맞게 정비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됨.
- 참고로, 품질시험소는 시설물 유지관리기관과 협의하여 2024년도 가연성가스 취약지점 29개소를 선정하여 매월1회 정기조사와 하절기(6~8월) 2회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복개하천 및 차집관거를 유지관리하는 도로사업소와 물재생센터 및 해당자치구에 결과를 통보하여 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토록 하고 있음.

10) 배기량(排氣量): 엔진·펌프·압축기 따위에서, 실린더 안의 피스톤이 최하의 위치에서 최상의 위치까지 한 번의 운동으로 밀어 내는 기체의 부피 (출처: 표준대국어사전)

11) 농도(濃度, concentration)란 액체나 혼합기체와 같은 용액을 구성하는 성분의 양(量)의 정도를 말한다. 또한 용액이 얼마나 진하고 묽은지를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이기도 하다. (출처: 위키백과)

주어진 양의 용매나 용액에 들어 있는 용질의 양. 질량의 백분율, 부피의 백분율, 몰수(mol數)의 비율이나 백분율, 일정한 부피 속에 들어 있는 용질의 몰 농도나 노말 농도 따위로 나타낸다. (출처: 표준대국어사전)

□ 24년도 복개하천 및 차집관거 가연성가스 조사 계획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화학시험과)

- 조사기간: 24.1.~12. (매월1회 정기조사, 하절기(6~8월) 2회 특별조사)
- 조사대상: 29개소 (전년대비 2개소 추가)
- 측정항목 및 가연성가스 인화범위
 - 조사항목 : 가연성가스 12항목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에틸렌, 프로필렌, 메탄올, 에탄올, 이소프로필알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 가연성 가스별 인화범위

구 분	인화 범위(%)	구 분	인화 범위(%)
메 탄	5.0~15.0	메 탄 올	6.0~50.0
에 탄	3.0~12.5	에 탄 올	3.1~27.7
프 로 판	2.1~9.5	이소프로필알콜	2.0~12.0
부 탄	1.8~8.4	벤 젠	1.2~8.0
에 틸 렌	2.7~36.0	톨 루 엔	1.0~7.8
프로필렌	2.4~10.3	에틸벤젠	1.0~6.7

○ 조사방법

- 현장에서 가스포집기로 비닐 팩 1L에 포집하여 시험실로 이송
- 시험실에서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가연성가스 정밀 분석
- 사용장비: 가스포집기, 가스크로마토그래피

○ 조사위치 (전년대비 2개소(월곡천, 정릉천) 추가)

구분	조사지점	조사위치	지 역
복 개 하 천	1 도림천	관악구 신사로 68	관악구
	2 전농천1	동대문구 황물로 43	동대문구
	3 전농천2	동대문구 고미술로 11	동대문구
	4 봉원천	마포구 창전삼거리	마포구
	5 사당천	서초구 방배천로 24 클럽54	서초구
	6 반포천1	서초구 서원초등학교 앞	서초구
	7 대방천	영등포구 도림동 270-2 토출구	영등포구
	8 면목천	동일로92길 40 사가정센터 앞	중랑구
차 집 관 거	9 불광천	은평구 증산3교 밑	은평구
	10 청계천1	전태일기념관	종로구
	11 청계천2	마전교 우안 멀티폴	종로구
	12 청계천3	청계천 박물관 앞 멀티폴	성동구
	13 고덕천	강명초등학교 옆	강동구
	14 강남탄천 공영주차장	강남구 대치동 78-25	강남구
	15 양재천	대치교 남서울 가스충전소 아래	강남구
	16 한강본류 (천호대교)	송파구 풍납동 49-3	송파구
	17 반포천2	반포주공아파트 26동 앞	서초구
	18 안양천	양화교 밑	영등포구

19	한강본류 (여의)	여의하류 인터체인지	영등포구
20	한강본류 (염강초)	염강초 앞 황금내공원 내	강서구
21	면목천2	겸재로30길 42 마젤란21아파트 앞	중랑구
22	한강본류	양화동 1-1	영등포구
23	안양천2	양화동 10-8	영등포구
24	도림천2	구로동 810-3	구로구
25	한강본류 (성수대교)	압구정동 373-1	강남구
26	성내천	오금동 75-4	송파구
27	탄천2	문정동 419-4	송파구
28	월곡천	하월곡동 67-122	성북구
29	정릉천	화랑로 6	성북구

○ 전년도(2023년) 가연성가스 조사 결과

- 연중 최고농도는 안양천(영등포구 양화동)에서 메탄가스가 0.42%로 측정되었으나, 메탄의 안화범위 하한점 5%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며 메탄 외의 항목은 미검출이거나 극소량만 검출됨.
- 메탄의 복개하천(8개소)의 연평균 농도는 0.011%이며 차집관거(19개소)의 연평균 농도는 0.027%로 차집관거의 농도가 높음.

연도	측정지점	실적	연평균농도	최고농도	최고농도 지점
2023	27개소	393개소	0.02% (메탄)	0.42% (메탄)	안양천 (영등포구 양화동)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도로표지의 정의에 「도로표지규칙」 제3조를 인용하는 것은 기능에 따른 도로표지만을 구분하고 안내방식에 따른 도로표지 구분이 배제되는 문제가 있어 도로표지의 정의 중 도로표지의 종류를 삭제하고 「도로표지규칙」 제2조 제1호가 정하고 있는 정의만 인용하는 한편, 도로표지 정기점검 점검사항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인용조문을 삭제토록 함.

8.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984
----------	------------

제안일자 : 2024년 8월 30일

제안자 : 도시안전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 도로표지의 정의에 「도로표지규칙」 제3조를 인용하는 것은 기능에 따른 도로표지만을 구분하고 안내방식에 따른 도로표지 구분이 배제되는 문제가 있어 도로표지의 정의 중 도로표지의 종류를 삭제하고 「도로표지규칙」 제2조제1호가 정하고 있는 정의만 인용하는 한편, 도로표지 정기점검 점검사항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인용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도로표지의 정의 중 도로표지 종류를 삭제함(안 제3조제5호).
- 도로표지 정기 점검사항 인용조문 중 「도로표지규칙」 제4조와 제11조를 삭제함(안 제29조제2항제2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표지”란 도로이용자가 도로시설을 쉽게 이용하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쉽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로의 방향·노선·시설물 및 도로명의 정보를 안내하는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안 제29조제2항제2호 중 “제4조부터 제12조”를 “제5조부터 제10조, 제12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5. “도로표지”란 도로구조의 보존과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도로표지규칙」 제2조에 따라 경계·이정·방향·노선 및 그 밖의 표지를 말한다.</p> <p>6. ~ 19. (생략)</p> <p>제29조(도로표지의 점검) ① (생략)</p> <p>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점검사항 : 정기점검은 「도로표지규칙」 제3조부터 제13조까지의 사항을 점검한다.</p>	<p>제3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p> <p>5. “도로표지”란 도로이용자가 도로시설을 쉽게 이용하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쉽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로의 방향·노선·시설물 및 도로명의 정보를 안내하는 도로의 부속물로서 「도로표지규칙」 제3조에 따라 경계·이정·방향·노선·안내 및 그 밖의 표지를 말한다.</p> <p>6. ~ 19. (현행과 같음)</p> <p>제29조(도로표지의 점검)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제4조부터 제12조----- -----.</p>	<p>제3조(정의) (개정안과 같음)</p> <p>1. ~ 4. (개정안과 같음)</p> <p>5. “도로표지”란 도로이용자가 도로시설을 쉽게 이용하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쉽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로의 방향·노선·시설물 및 도로명의 정보를 안내하는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p> <p>6. ~ 19. (개정안과 같음)</p> <p>제29조(도로표지의 점검)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1. (개정안과 같음)</p> <p>2. ----- -----제5조부터 제10조, 제12조-----</p>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표지”란 도로이용자가 도로시설을 쉽게 이용하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쉽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로의 방향·노선·시설물 및 도로명의 정보를 안내하는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제3조부터 제13조”를 “제5조부터 제10조, 제12조”로 한다.

제44조 중 “공공하수도시설운영·관리 업무지침”을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배기량을”을 “농도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5. <u>“도로표지”란 도로구조의 보존과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써 「도로표지규칙」 제2조에 따라 경계·이정·방향·노선 및 그 밖의 표지를 말한다.</u></p> <p>6. ~ 19. (생략)</p> <p>제29조(도로표지의 점검) ① (생략)</p> <p>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점검사항 : 정기점검은 「도로표지규칙」 <u>제3조부터 제13조까지</u>의 사항을 점검한다.</p> <p>제44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하수관거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은 환경부의 <u>공공하수도시설운영·</u></p>	<p>제3조(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도로표지”란 도로이용자가 도로시설을 쉽게 이용하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쉽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로의 방향·노선·시설물 및 도로명의 정보를 안내하는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u></p> <p>6. ~ 19. (현행과 같음)</p> <p>제29조(도로표지의 점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제5조부터 제10조, 제12조</u> -----.</p> <p>제44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 ----- ----- <u>「공공하수도시설 운영·</u></p>

관리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제45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이하 “시험소장”이라 한다)은 하천복개 구조물 및 하수관거 중 차집관거의 주요 취약지점을 선정하여 월1회 이상 하수가스의 발생여부 및 배기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관리 업무지침 -----.

제45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

농도를 -----.

③·④ (현행과 같음)